

의안번호	제 748 호
의결연월일	2026. 1. 9. (제311회 임시회)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경화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5. 12. 19.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748 호
----------	---------

발의년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이경화, 가선숙, 강문수,
김맹호, 김용경, 문수기,
안동석, 안효돈, 이정수,
최동묵, 한석화 의원

1. 제정이유

- 2016년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
- 해양보호구역 주변 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4조)
- 나.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제16조)
- 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3조)
- 라.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제28조, 제36조, 제41조, 제57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산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법 제41조에 따른 해역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해양보호구역센터”란 해양보호구역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문객의 인식증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체를 말한다.

5.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란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 단속지원 및 안내 등 인식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충청남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제2장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건의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변경

4.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
5. 해양보호구역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6.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8.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9.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및 해양수산·환경 분야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3. 해양생태계 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 등 활동가, 대학(조교수급 이상) 또는 해양·환경 분야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판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맡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업무팀장이 맡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내용 등 공개)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요약 등의 공개 요구가 있으면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하며, 실비 보상의 절차 기준 및 계약의 체결·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8조(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시장은 해양보호구역 오염 예방과 주민 소

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단속 및 안내 등 인식증진
5.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6. 해양생태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7. 해양보호구역 관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청소년 교육

제19조(해양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시장은 충청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별로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전시·홍보

2. 해양보호구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해양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단속
4. 해양보호구역 내 쓰레기 수거·처리
5.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참여 및 국제협력

제23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의 체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

제24조(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①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하 “명예관리인” 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관리인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감시 및 관리 활동
2.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활동
3.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

③ 명예관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는 명예관리인증을 패용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 ① 명예관리인의 위촉 기간은 당해연도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관리인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해촉) 시장은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기간이 만료된 때
2. 명예관리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위촉된 사람이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관리인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제2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인 활동 수당과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등) 명예관리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한다.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해양자산”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

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채취방

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7.] [대통령령 제35502호, 2025. 5. 7., 일부개정]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어업활동의 중단·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

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양보호구역 주민 소득사업 추진(수산종자 매입방류)
 - 명예관리인 및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 관련조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주민 소득사업, 명예관리인 및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도
504,000	52,800	112,800	112,800	112,800	112,8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52,800	112,800	112,800	112,800	112,800	504,000
수산종자 매입방류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명예관리인 운영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